

정보공개제도 실무 편람

발행일 1999. 6. 30

발행처 총무과(서무)

정보공개제도접수창구

전화 042) 481-2012~3

머 리 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민간단체 및 개인의 높은 관심에 비해 공공기관의 인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통계조사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통계조사 결과를 가능한 확대제공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료관리 또한 중요한 일종의 하나이다.

정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균형있는 통계자료 제공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 편람」을 작성하였다.

이 편람이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은 물론, 통계청 모든 직원에게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1999년 6월
총무과장
노재곤

목 차

I.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II. 관련근거	3
III.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4
IV. 최근 정보공개 청구 현황	4
V.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5
1.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5
2. 대상정보	5
3. 비공개대상정보	5
VI.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7
1. 청구 및 접수	7
2. 정보공개 전담부서	7
3. 해당과의 조치사항	8
4. 청구된 정보의 공개	10
5. 수수료 징수	12
6. 정보공개관련 문서의 발송 및 기록유지	12

VII.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3
1. 심의대상	13
2. 구성	13
3. 운영절차	13
VIII. 불복구제절차	14
1. 이의 신청	14
2. 이의 신청기간	14
3. 이의 신청결과 통지	15
4. 행정심판	15
5. 행정소송	16
■ 사회단체 건의사항	3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35

I.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국민이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올바른 국정참여로 참된민주주의 실현
3.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하므로서 국민의 신뢰성 확보
4. 국민은 자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5.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 필요

II. 관련근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5242호)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5937호)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1호)

Ⅲ.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Ⅳ. 최근 정보공개 청구 현황

1. 최근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청 정보공개 청구건수 : '99.6.15일 현재 6건 ('98년 2건)
 -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계류중인 건수 : 2건
2. 그 동안 정보공개는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행정감시 목적이나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되고 있음
 - 최근 정보공개 청구 사례 : 실업률, 기관장 업무 추진비 등

V.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1.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3.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VI.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에 의하여 제출

2. 정보공개 전담부서

- 전담부서 지정 운영 : 총무과(서무)
- 전담부서의 조치사항
 - 전담부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받은 경우
 - 즉시공개가 가능한 경우 : 해당과로 청구인을 안내하여 공개 실시
 - 즉시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 접수후 즉시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청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정보공개청구서상의 내용 기재

-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과에 이송
- 해당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통보받아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기재
-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에 관련된 경우 공개 청구서 원본을 접수할 해당과를 지정
 - ※ 청구서 원본을 접수한 해당과에서는 사본을 접수한 부서의 결정사항을 취항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3. 해당과의 조치사항

- 해당과에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총무과)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 받아 처리
-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하나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가 결정
 - 공개여부결정기간은 15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5일간 연장 가능
 - 연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되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별지 제3호서식)

- 청구된 사항이 제3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에게 공개청구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제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3자의 의견 청취(별지 제5호서식)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요청
- 정보공개여부 결정사항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별지 제6호서식)
 - 정보의 공개결정 통지시에는 결정통지의 유의사항(직접공개시 지침물, 수수료 등)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통지시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
 - 별도의 기재내용이 필요한 경우 통지서의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기재하거나 첨부물로 처리
 - 공개결정통지후 즉시 정보공개 전담부서에 정보 공개여부 결정사항을 통지

4. 청구된 정보의 공개

- 공개 방법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및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

- 문서·도면·사진·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필름·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 도면 또는 양이 방대하여 전부 사본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공개만 가능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

-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후 담당자 서명으로 갈음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분리 가능하고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경우 즉시 공개
- 공개시 확인사항
- 본인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법정 대리인 :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 대리인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 ※ 정보공개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본인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청구인이 준비해 온 수입인지를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뒷면이나 적당한 여백에 붙이고 소인 날인

5. 수수료 징수

- 수수료 산정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상의 수수료 금액 적용(별표1 참조)
-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에 우선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징수방법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우편요금은 우표로 징수
 - ※ 청구인이 공공목적으로 청구하거나 청장이 판단하여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50%의 감면이 가능함

6. 정보공개관련 문서의 발송 및 기록유지

- 발송기준 : 일반민원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발송
- 발송방법
 - 우편 : 공개결정통지서 및 공개자료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며 영수증은 필히 보관하여야 함
 - 팩스 : 팩스 발송시에는 수신후 수신처와 수신여부를 유선 확인하여 수신자 및 수신일자를 기록 유지하며 팩스리포트지를 출력하여 보관
- 발송 : 처리과에서 발송후 발송일자를 총무과에 통보하여야 함

VII.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 심의대상

- 통계청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개결정통지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성

- 위원장 : 통계기획국장
- 위원(5명) : 경제통계국장, 사회통계국장, 통계정보국장, 총무과장, 기획과장
- 간사 : 총무과의 서무담당 사무관

3. 운영절차

- 해당과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신청양식에 의거 총무과로 정보공개심의회 요청(별표2 참조)
 - 심의회 요청서 제출시 심의자료 7부 동시 제출
- 심의회 개최 의뢰를 받은 총무과는 회의개최안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후 각 위원 및 해당과에 통보

- 회의개최시 해당과의 과장과 실무자가 참석하여 답변 및 회의내용을 기록 정리함(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음)
- 총무과는 정리된 회의내용을 처리과에서 1부 받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심의회 개최사항을 기록 유지

Ⅵ. 불복구제 절차

1. 이의 신청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별지 제8호서식)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2. 이의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3. 이의 신청결과 통지

-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4. 행정심판

-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심판 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재정경제부) 또는 우리청에 제출
 - 우리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재정경제부)에 송부

- 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출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단 부득이 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5. 행정소송

- 제기권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별지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정 보 내 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 장 이 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사항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계 청 장</p>			

【별지5】

제3자 의견청취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견청취자 (관계공무원등)	직급 (직위)			이름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직급 (직위)		서명 또는 인	
			이름			
일반인 인 경우	이름					서명 또는 인

【별지6】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접수일자	199	접수번호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사유			
공개방법	직접공개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우송공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A)	우편요금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통 계 청 장</p>			

(뒷면)

※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와 우편요금(우표)을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으로부터 공개여부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5.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8년 2월 28일 까지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8】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청인	이 름 (법인명 등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 의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p>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 계 청 장 귀하</p>		

【별표1】

정보공개 수수료

(단위 : 원)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열람 -1건(10매준): 200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 · 1매초과마다: 100 -B4이하: 250 · 1매초과마다: 50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	□사본(1매마다) -A3이 : 300 -B4이하: 250 □복제 -1건(10매기준)1회: 250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
도면·카드	□열람 -1매: 200 -1매초과마다: 100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 · 1매초과마다: 100 -B4이하: 250 · 1매초과마다: 50	□열람 -1매: 200 · 1매초과마다: 100	□사본(1매마다) -A3이상: 300 -B4이하: 250 □복제 -1건(10매기준)1회: 250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기준) 1회: 500 ·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 · 1매초과마다:200 -B4이하: 250 · 1매초과마다:150 □복제 -1롤마다: 1,000		
사진·필름	□열람 -1매: 200 · 1매초과마다: 50	□인화(필름) -1컷: 500 · 1매초과마다 3" × 5" : 200 5" × 7" : 300 8" × 10" : 400 □복제(필름) -1컷마다: 6,000	□열람 -1매: 200 · 1매초과마다: 50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 · 1매초과마다 3" × 5" : 50 5" × 7" : 100 8" × 10" : 150 □복제 -10분마다: 5,000

【별표2】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제 1 조(설치) 통계청의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청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3.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기획국장이 된다.

② 심의회 위원은 경제통계국장, 사회통계국장, 통계정보국장, 총무과장 및 기획과장이 된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으로 선임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조(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 8 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98. 1. 1)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19)

이 규정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

수신 : 정보공개심의위원장

1999. . .

참조 : 간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안건 :
2. 위원회 개최 사유 :
3. 회의개최 희망일시 :
4. 회의장소 :
5. 기타 사항

붙임 : 심의자료 7부. 끝.

○ ○ ○ ○ 국 장

사회단체 건의사항

- 경실련 및 참여연대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항 -

사회단체 건의사항

1.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각 기관의 인식 부족

-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공무원이 많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있음
-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례 가운데는 해당기관이 이 제도를 몰라 청구인이 이 제도를 당해 기관에 설명하여 주고 공개절차를 밝힌 사례도 있음

2. 정보공개청구운영의 부실

- 청사입구에 정보공개 주관부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각 공공기관별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하지 않고 있음

3. 공개여부결정기간 및 자료입수기간의 문제

- 공개 및 비공개여부 결정 통지에 15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공공기간이 규정되보다 채워 공개할 경우 30일이상이 소요됨. 당해기관이 특정 사유를 명분삼아 한번 정도의 공개여부를 연장할 경우 15일이 추가 소요되어 공개청구 정보는 45일이 지나 정보의 가치가 반감됨

- 실제 공개청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후 정보가 공개된 사례도 있어 공개여부결정기간 및 자료입수기간을 단축함이 바람직
4. 비공개결정통지서 교부시 문제
- 비공개의 경우 불복절차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비공개의 경우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은 경우도 있음
5. 내용이 방대하거나 무체계적으로 일목요원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정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6. 청구된 정보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항을 정보공개를 연장하거나 비공개의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7. 현재 비공개대상정보를 법에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애매한 사유로 비공개를 결정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타당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關한法律및同法施行令

法 律	施 行 令
<p>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p> <p>[法律 第5242號, 1996.12.31]</p> <p style="text-align: center;">第 1 章 總 則</p> <p>第1條(目的) 이 法은 公共機關이 保有·管理하는 情報의 公開 義務 및 國民의 情報公開請求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國民의 알權理를 保障하고 國政에 對한 國民의 參與와 國政運營의 透明性을 確保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情報”라 함은 公共機關이 職務상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圖面·寫眞·필름·테이프·슬라이드</p>	<p>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施行令</p> <p>[大統領令 第15498號, 1997.10.21] [大統領令 第15937號, 1998.12.10改正]</p> <p style="text-align: center;">第 1 章 總 則</p> <p>第1條(目的) 이 令은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法 律	施 行 令
<p>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媒體 등에 記錄된 사항을 말한다.</p> <p>2. “公開”라 함은 公共機關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을 閱覽하게 하거나 그 寫本 또는 複製物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p> <p>3.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을 말한다.</p> <p>第3條(情報公開의 原則) 公共機關이 保有·管理하는 情報은 이 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公開하여야 한다.</p>	<p>第2條(公共機關의 範圍) 法第2條第3號에서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의 機關을 말한다.</p> <p>1. 初·中等教育法, 高等教育法 其他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各級學校</p> <p>2.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特殊法人</p> <p>3. 公務員年金法第47條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의 支給停止對象 機關</p>

法 律	施 行 令
<p>第4條(適用範圍) ①情報の公開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p> <p>②地方自治團體는 그 所管事務에 關하여 法令의 範圍안에서 情報公開에 關한 條例를 定할 수 있다.</p> <p>③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情報 및 保安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에서 國家安全保障과 關聯된 情報分析을 目的으로 蒐集되거나 作成된 情報에 對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5條(公共機關의 義務) ①公共機關은 情報の 公開을 請求하는 國民의 權利가 尊重될 수 있도록 이 法을 運營하고 所管 關聯法令을 整備하여야 한다.</p> <p>②公共機關은 情報の 適切한 保存과 迅速한 檢索이 이루어 지도록 情報管理體系를 整備 하여야 한다.</p>	

法 律	施 行 令
<p data-bbox="183 299 557 379">第 2 章 情報公開請求權者 및 公開對象情報</p> <p data-bbox="169 430 597 551">第6條(情報公開請求權者) ①모든國民은 情報의 公開를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p> <p data-bbox="183 577 597 651">②外國人의 情報公開請求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 data-bbox="171 913 600 1075">第7條(非公開對象情報) ①公共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情報에 對하여는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data-bbox="189 1102 600 1451"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法律 또는 法律에 依한 命令에 의하여 秘密로 維持되거나 非公開事項으로 規定된 情報 2. 公開될 境遇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등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p data-bbox="618 299 992 379">第 2 章 外國人의 情報公 開請求</p> <p data-bbox="604 430 1033 638">第3條(外國人의 情報公開請求) 法 第6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는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p> <ol data-bbox="622 665 1039 883"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거나 學術·研究를 위 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자 2.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法 律	施 行 令
<p>3. 公開될 경우 國民의 生命 · 身體 및 財産의 保護 其他 公共의 安全과 利益을 현저히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p> <p>4. 進行中인 裁判에 關聯된 情報와 犯罪의 豫防, 搜查, 公訴의 提起 및 維持, 刑의 執行, 矯正, 保安處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경우 그 職務遂行을 현저히 困難하게 하거나 刑事被告人의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할만한 상당한 理由가 있는 情報</p> <p>5. 監査 · 監督 · 檢査 · 試驗 · 規制 · 入札契約 · 技術開發 · 人事管理 · 意思決定過程 또는 內部檢討過程에 있는 事項 등으로서 公開될 경우 業務의 公正한 遂行이나 研究 · 開發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認定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情報</p> <p>6. 당해 情報에 包含되어 있는 이름 · 住民登錄番號 등에</p>	

法 律	施 行 令
<p>의하여 特定人을 識別할 수 있는 個人에 관한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 個人에 관한 情報을 除外한다.</p> <p>가. 法令등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閱覽할 수 있는 情報</p> <p>나. 公共機關이 作成하거나 取得한 情報로서 公表를 目的으로 하는 情報</p> <p>다. 公共機關이 作成하거나 取得한 情報로서 公開하는 것이 公益 또는 個人의 權利救濟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情報</p> <p>7. 法人, 團體 또는 個人의 營業上 秘密에 관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경우 法人 등의 正當한 利益을 현저히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 情報을 除外한다.</p> <p>가. 事業活動에 의하여 發生하는 危害로부터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健康을 保護하기 위하여 公開할 必要가 있는 情報</p>	

法 律	施 行 令
<p>나. 違法·不當한 事業活動으로 부터 國民의 財産 또는 生活을 保護하기 위하여 公開할 必要가 있는 情報</p> <p>8. 公開될 경우 不動産投機· 買占賣惜 등으로 特定人에게 利益 또는 不利益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p> <p>②公共機關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情報가 期間의 經過등으로 인하여 非公開의 必要性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情報를 公開對象으로 하여야 한다.</p>	
<p>第 3 章 情報公開의 節次</p>	<p>第 3 章 情報公開의 節次</p>
<p>第8條(情報公開의 請求方法)① 情報의 公開를 請求하는 자 (이하 “請求人”이라 한다)는 當該 情報를 保有하거나 管理하고 있는 公共機關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情報公開請求書를 提出하여야 한다.</p>	<p>第4條(情報公開의 請求方法) 法律8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情報公開請求書는 公共機關에 직접 出席하여 提出하거나 郵便·模寫電送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提出할 수 있다.</p>

法 律	施 行 令
<p>1. 請求人の 이름 ·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p> <p>2. 公開를 請求하는 情報의 內容 및 使用目的</p> <p>②情報公開請求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事項이거나 請求量이 過多하여 正常的인 業務遂行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請求된 情報의 寫本 또는 複製物의 交付를 制限할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사항외에 情報公開의 請求에 關하여 必要한 사항은 國會規則 · 大法院規則 · 憲法裁判所規則 ·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5條(削除)</p> <p>第6條(接受證의 交付) 公共機關이 情報公開請求書를 接受한 때에는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하고 請求人에게 接受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請求人이 요청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接受證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即時 또는 口述處理가 可能한 情報의 情報公開請求書를 接受한 때 2. 郵便 · 模寫電送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情報公開請求書를 접수한 때 <p>第7條(情報公開請求書의 移送)</p> <p>①公共機關은 다른 公共機關이 保有하거나 管理하는 情報의 情報公開請求書를 접수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所管機關에 移送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情報公開請求書를 移送한 때에는 즉시 所管機關과 그 사유를</p>

法 律	施 行 令
<p>第9條(情報公開與否의 決定)</p> <p>①公共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公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公開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p> <p>②公共機關은 不得已한 事由로 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公開與否를 決定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滿了日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5日의 範圍內에서 公開與否 決定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機關은 延長理由를 請求人에게 遲滯없이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p>	<p>明示하여 請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第8條(公開與否決定期間의 延長)</p> <p>法第9條 第2項에서 “不得已한 事由”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의 事由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에 많은 情報公開가 請求되거나 公開請求된 情報의 내용이 複雜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公開與否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情報를 생산한 公共機關 또는 公開請求된 情報와 관련 있는 第三者의 意見聽取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公開與否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處理된 情報가 公開部分과 非公開部分을 包含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部分公開 可能與否의 決定이 困難한 경우 4. 天災地變, 一時的인 業務量의 增大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公開與否의 결정이 困難한 경우

法 律	施 行 令
<p>③公共機關은 公開對象情報의 全部 또는 一部가 第三者와 關聯이 있다고 認定되는때에 是 公開請求된 事實을 第三者에게 遲滯없이 通知하여야 하며, 必要한 境遇에는 그에 對한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p>	<p>第9條(第三者의 意見聽取) ① 法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第三者의 意見聽取는 書面에 의한다. 다만, 公共機關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와 第三者가 원하는 때에는 口述로 할 수 있다.</p> <p>②第1項 단서之 規定에 의하여 口述로 意見을 聽取한 關係 公務員 또는 職員은 口述내용을 記錄하고 本人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p> <p>第10條(情報生産 公共機關의 意見聽取等) ① 公共機關은 公開請求된 情報중 全部 또는 一部가 다른 公共機關이 생산한 情報인때에는 當해 情報를 생산한 公共機關의 의견을 들어 公開與否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사무관리규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部·外交 通商部 또는 政府記錄保存所에 移管되는 文서는 이를 生産·移管되는 公共機關의 長이 文서 別로 公開與否를 명시하여 移管하여야 한다.</p>

法 律	施 行 令
<p>④情報公開을 請求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公共機關이 公開與否를 決定하지 아니한때에는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第10條(情報公開審議會) ①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公開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議會를 設置·運營한다.</p>	<p>다만, 法施行前에 이관받아 統一部·外交通商部 또는 政府記錄保存所에 보존중인 문서의 公開與否는 文書保存機關의 長이 결정한다.</p> <p>第11條(關係機關 및 部署間의 협조) ①情報公開請求事項을 처리하는 부서는 關係機關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情報公開請求書를 접수한 후 遲滯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p> <p>第12條(情報公開審議會) ①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과 第2條 各號의 機關은 機關의 業務性格이나 業務量 등을 고려하여 法 第10條의</p>

法 律	施 行 令
<p>②情報公開審議會의 構成·運營 및 機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규정에 의한 情報公開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1個 이상 當該 機關 또는 所屬機關에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다만, 當該 機關에 審議會와 類似한 機能을 遂行하는 委員會 등이 있는 경우에는 當해 委員會 등으로 하여금 審議會의 機能을 遂行하게 할 수 있다.</p> <p>②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公共機關의 長이 公開請求된 情報의 開與否를 決定하기 困難한 事項 2. 法 第16條 및 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3. 기타 情報公開制度의 運營에 관한 사항 <p>③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p> <p>④審議會의 委員長 및 委員은 公共機關의 長이 所屬 公務員 또는 任·職員 중에서 指名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公務員이나</p>

法 律	施 行 令
<p>第11條(情報公開與否決定의 通知) ①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의 公開를 決定한 때에는 公開日時· 公開場所 등을 明示하여 請求人 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②公共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情報를 公開함에 있어</p>	<p>任·職員이었던 者 또는 외부 專門家를 委囑할 수 있다.</p> <p>⑤審議會의 委員의 任期는 그 職位에 在職하는 期間으로 본다. 다만, 公務員이나 任·職員 이었던 者 또는 외부 專門家인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p> <p>⑥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 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手當· 旅費 기타 필요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p> <p>⑦이 令에 규정한 것외에 審 議會의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審議會가 설치된 公共 機關의 長이 定한다.</p> <p>第13條(情報公開日時の 通知 등) ①公共機關은 情報의 公開를 결정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公開를 결정한 날부터 15日이내 에 公開되도록 法 第11條第 1項의 規定에 依한 公開日時를 定하여 請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法 律	施 行 令
<p>당해 情報의 原本이 汚損 또는 破損될 憂慮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당해 情報의 寫本등을 公開할 수 있다.</p> <p>③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의 非公開決定을 한 때에는 그 內容을 請求人에게 遲滯없이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非公開事由·不服方法 및 不服節次를 明示하여야 한다.</p> <p>第12條(部分公開) 公開請求한 情報가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部分과 公開가 可能한 部分이 混合되어 있는 境遇에는 公開請求의 趣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두 부분을 分離할 수 있는 때에는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部分을 除外하고 公開하여야 한다.</p>	<p>다만, 請求人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公開日時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請求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公開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情報의 公開에 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內部的으로 終結處理할 수 있다.</p> <p>第14條(情報公開方法) ①情報의 公開는 다음 各號의 1의 方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文書·圖面·寫眞 등은 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視聽 또는 引火物·複製物の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視聽·閱覽 또는 寫本·複製物の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媒體에 기록된 사항 등은 媒體의 閱覽·視聽 또는 寫本·複製物の 교부

法 律	施 行 令
<p>第13條(即時 處理가 可能한 情報의 公開 節次) 即時 또는 口述 處理가 可能한 情報의 公開 節次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②公共機關은 情報을 公開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正當한 代理人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請求人의 요청에 의하여 第1項 各號의 寫本·複製物·引火物 또는出力物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p> <p>③第1項 各號의 규정에 依하여 情報을 公開하는 때에는 타인의 知的所有權, 私生活의 秘密 기타 他人의 權利 또는 利益이 不當하게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留意 하여야 한다.</p> <p>第15條(即時 處理가 可能한 情報의 公開 節次) ①法 第13條에서 “즉시 또는 口述처리가 가능한 情報”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情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國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各種 弘報資料 2. 이미 公開하기로 결정된 情報로서 公開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情報 3. 기타 公共機關의 장이 定하는 사항

法 律	施 行 令
	<p>②第1項의 情報에 대한 公開請求는 法 第8條第1項의 情報公開請求書에 의하여 접수하되, 法 第9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公開하여야 한다.</p> <p>第16條(情報公開時 請求人の 確認) ①請求된 情報의 公開는 請求人 本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하여야 한다.</p> <p>②公共機關이 第1項의 規정에 의하여 情報를 公開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의 구분에 의한 身分證明書 등에 의하여 請求人 본인 또는 그 正當한 代理人임을 確認하여야 한다. 다만, 情報를 公開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正當한 代理人임을 確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請求인 本人에게 公開할 때에는 請求인의 住民登錄證 기타 그 身元을 確認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請求人이 外國人인 경우에는 旅券·外國人登錄證 其他 第3條第1號의 規정에 의한 外國人임을</p>

法 律	施 行 令
<p>第14條(請求人の義務) 請求人は 이 法の 規定에 의하여 取得한 情報을 請求한 目的에 따라 適正하게 使用하여야 한다.</p>	<p>確認 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 請求인이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경우에는 事業者登錄證 · 外國團體登錄證 기타 第3條 第2號의 규정에 의한 法人 또는 團體임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p> <p>2. 請求人の 法定代理人에게 公開할 때에는 法定代理人임을 證明할 수 있는 서류와 代理人의 住民登錄證 기타 그 身元을 확인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p> <p>3. 請求인의 任意代理人에게 公開할 때에는 總理令이 定하는 委任狀과 請求人 및 受任人の 住民登錄證 기타 그 身元을 確認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p> <p>第17條(情報公開處理狀況의 記錄) 公共機關은 情報公開請求에 대한 處理狀況을 情報公開 處理臺帳에 記錄·維持하여야 한다.</p>

法 律	施 行 令
<p>第15條(費用負擔) ①情報の公開 및 郵送 등에 所要되는 費用은 實費의 範圍안에서 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p> <p>②公開를 請求하는 情報の 使用目的이 公共福利의 維持·增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減免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 및 徵收 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8條(費用負擔) ①法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の 公開 및 郵送 등에 所要되는 費用은 手數料와 郵便料金 (公開되는 情報の 寫本·複製物·引火物 또는 出力物을 郵便으로 送付하는 경우에 限한다)으로 구분하되 手數料의 金額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 手數料의 金額은 條例로 定한다.</p> <p>②法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費用을 減免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各號의 1과 같으며, 手數料에 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非營利的 學術·公益團體 또는 法人의 代表者 또는 그 職員이 學術이나 研究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情報을 請求한때 2. 教授·教師 또는 學生이 教育資料나 研究目的으로 필요한 情報을 所屬機關의 長의 確認을 받아 請求한때

法 律	施 行 令
	<p>3. 기타 公共機關의 長이 公共福利의 維持·增進을 위하여 費用의 減免이 필요하다고 認定한 때</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減免比率은 公共機關의 長이 定한다.</p> <p>④手數料는 政府機關에는 收入印紙로, 地方自治團體에는 收入證紙로, 政府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公共機關에는 現金으로 各各 納付한다. 다만, 不得已한 경우에는 政府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現金으로 納付할 수 있다.</p> <p>⑤公共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수료를 徵收한 때에는 情報公開決定通知書(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即時 또는 口述處理가 可能한 情報을 公開한 때에는 情報公開請求書)에 收入印紙·收入證紙 또는 現金 納付 領收證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p>

法 律	施 行 令
<p data-bbox="221 287 573 324">第 4 章 不服救濟節次</p> <p data-bbox="181 359 609 1475"> 第16條(異議申請) ①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為로 인하여 法律上 利益의 侵害를 받은 때에는 公共機關으로부터 情報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日 이내에 當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하고 그 結果를 請求人에게 遲滯없이 書面으로 通知 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却下 또는 棄却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請求人에게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는 취지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結果通知와 함께 通知 하여야 한다. </p>	<p data-bbox="691 287 985 324">第 4 章 異議申請</p> <p data-bbox="616 359 1056 1139"> 第19條(異議申請方法)法 第16條 第1項 및 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이름,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法人·團體의 경우에는 그 名稱 및 事務所 또는 事業所의 所在地와 代表者의 이름) 2. 異議申請의 對象이 되는 情報公開與否決定의 內容 3. 異議申請의 趣旨 및 理由 4. 情報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非公開決定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p>

法 律	施 行 令
<p>第17條(行政審判) ①請求인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為로 인하여 法律上 利益의 侵害를 받은 때에는 行政審判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公共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為에 대한 裁決廳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 한다.</p> <p>②請求人は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p> <p>③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중 情報公開與否決定에 관한 行政審判에 관하여는 委員은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第3項의 委員에 대하여는 刑法 其他 法律의 罰則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法 律	施 行 令
<p>第18條(行政訴訟) ①請求인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為로 인하여 法律上 利益의 侵害를 받은 때에는 政訴訟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p> <p>②裁判長은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參與시키지 아니하고 提出된 公開請求情報를 非公開로 閱覽·審査할 수 있다.</p> <p>③裁判長은 裁判의 對象이 第7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중 國家安全保障·國防 또는 外交에 관한 情報의 非公開決定處分인 境遇에 公共機關이 그 情報에 대한 秘密指定의 節次, 秘密의 等級·種類 및 性質과 이를 秘密로 取扱하게 된 實質的인 理由 및 公開를 하지 아니하는 事由 등을 立證하는 때에는 당해 情報를 提出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法 律	施 行 令
<p>第19條(第3者의 異議申請 등)</p> <p>①第9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請求된 事實을 通知받은 第3者는 通知받은 날부터 3日 이내에 당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 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당해 第3者의 意思에 反하여 公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事由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하며, 公開通知를 받은 第3者는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하거나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이 경우 異議申請은 通知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第16條第2項·第3項, 第17條 第1項 후단·第2項 내지 第4項 및 第18條 第2項·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行政審判 및 行政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請求人”을 각각 “第3者”로 본다.</p>	

法 律	施 行 令
<p style="text-align: center;">第 5 章 補 則</p> <p>第20條(制度總括) 行政自治部長官은 이법에 의한 情報公開 制度의 政策樹立 및 制度改善 事項 등에 관한 企劃·總括 業務를 管掌한다.</p> <p>第21條(情報提供) 公共機關은 公開請求되지 아니한 情報로서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에 대하여는 이를 國民에게 提供하도록 積極的으로 努力하여야 한다.</p> <p>第22條(主要文書目錄의作成·備置등) ①公共機關은 一般國民이 公開對象情報를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主要文書目錄 등을 作成·備置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5 章 補 則</p> <p>第20條(情報提供) ①公共機關은 法 第21條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情報 通信技術을 이용한 방법, 政府 刊行物의 發刊·販賣 등 다양한 방법으로 國民에게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p> <p>②行政自治部長官은 公共機關이 提供한 情報의 利用便宜를 위하여 綜合目錄의 發刊 기타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第21條(主要文書目錄의作成·備置 등) ①公共機關은 法 第22條의 규정에 의하여 主要 文書目錄과 情報公開便覽을 作成·備置하여 一般國民의 閱覽에 提供하여야 한다.</p>

法 律	施 行 令
<p>②公共機關은 情報의 公開에 관한 事務를 迅速하고 圓滑하게 遂行하기 위하여 情報 公開場所를 確保하고 公開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p>	<p>②第1項의 主要文書目錄에는 公共機關의 各 部署別 細部 機能 및 主要文書題目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경우 部署別 主要文書題目의 目錄은 사무 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保存文書記錄臺帳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情報公開便覽에는 情報公開節次를 一般國民이 쉽게 알 수 있도록 情報公開 請求 및 處理節次, 情報公開 請求書式, 手數料 기타 主要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p> <p>④公共機關은 請求人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情報公開 主管部署를 指定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情報公開 請求書式·컴퓨터단말기 등을 備置하여야 한다.</p>
<p>第23條(資料의 提出要求 등) ①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總長·中央 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및</p>	<p>第22條(資料提出) ①政府投資 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과 이 令 第2條에서 規정한 公共機關은</p>

法 律	施 行 令
<p>行政自治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관계公共機關에 대하여 情報公開에 관한 資料의 提出 등의 협조를 要請할 수 있다.</p>	<p>前年度の 情報公開 運營實態를 每年 1月 31日까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p> <p>②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情報公開運營實態를 包含한 前年度の 情報公開運營實態를 매년 2月10日까지 관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p> <p>③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提出받은 情報公開運營實態를 포함한 前年度の 情報公開運營實態를 每年 2月 말일까지 行政自治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p> <p>④行政自治部長官은 年1회 第3項의 규정에 의한 情報公開運營實態를 綜合하여 公表하여야 한다.</p>

法 律	施 行 令
<p>②行政自治部長官은 情報公開 制度의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國會事務處·法院 行政處·憲法裁判所 및 中央 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情報公開制度의 運營 實態를 確認·點檢할 수 있다.</p> <p>第24條(委任規定) 이 法의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 · 大法院規則 · 憲法裁判所規則 · 中央 選舉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3條(運營實態 確認·點檢 등) 行政自治部長官은 法 第 23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情報公開制度의 運營實態를 確認·點檢하는 경우에는 該當 公共機關의 長에게 確認· 點檢의 趣旨·內容, 擔當公務員 의 人的事項 및 訪問日時를 미리 通報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이 法은 公布후 1년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①(施行日) 이 令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p> <p>②(公共機關의 範圍에 關한 特例) 1999年 12月 31日까지는 第2條 第3號중 “公務員年金法 第47條 第2號 내지 第4號”를 “公務員年金法 第47條 第2號 또는 第3號”로 본다.</p>

法 律	施 行 令
	<p>③(다른 法令의 개정) 사무 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第33條第2項 내지 第4項을 各各 削除한다.</p> <p>第87條를 삭제한다.</p> <p>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令 施行當時 從前의 사무관리규정 第33條 第2項 및 第87條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文書·資料의 閱覽 또는 複寫에 관하여는 從前의 규정에 의한다.</p>